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

현 행	개 정	비고
제1조 ~ 제3조 <기재 생략> **제4조 (기본 협약사항)** ①~⑥ <기재 생략> ⑦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 1. <기재 생략> 2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 3. ~ 6. <기재 생략> ⑧~⑩ <기재 생략> **제5조 ~ 제10조 <기재 생략>** <신설>	**제1조 ~ 제3조 <현행과 동일>** **제4조 (기본 협약사항)** ①~⑥ <현행과 동일> ⑦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 1. <현행과 동일> 2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 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 3. ~ 6. <현행과 동일> ⑧~⑩ <현행과 동일> **제5조 ~ 제10조 <현행과 동일>** 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	- 약관변경 권고반영